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양승이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0호로 2023년 5월 26일 양송이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최근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추세로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의 동물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나. “동물학대”,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등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공고, 반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안 제10조)

마. 유기동물 보호담당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11조)

바.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및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 사.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 아.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6조)
- 자. 동물의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7조)
- 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4.26. 전부개정, 2023. 4.27.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사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정 위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는 구조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동물의 반환 및 소유권 취득)**는 보호 동물의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구(區)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1조(동물보호 및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담당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대상 전공을 축소하되, 실무 경험과 관련한 요건 사항을 구체화함.
- **안 제12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기증)**에서 안 제10조에 따라 구(區)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 및 관련 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이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 중성화 목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되 예외 조항을 신설함. 또한 구조한 뒤 안 제9조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6조(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공원시설 중 “동물놀이터”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의 자치구에 총 12개소로

영등포구에는 안양천 오목교 부근(문래동6가 52)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현 조례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를 삭제함.
이는 동물복지정책 수립 등 동물 보호에 대해 자문하는 동물복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에서 적극 운영하기에 자치구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한 것임.
- 현 조례 제17조(출입·검사 등)를 삭제함. 「동물보호법」 제8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옮긴 규정이기 때문에 입법 경제상 불필요하여 삭제함.
- 현 조례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를 삭제하고 「동물보호법」 제90조에 근거하여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¹⁾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물 유기 및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유기·학대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동반자적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본 개정조례안 또한 이와 같은 방향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의 19.6%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이며 반려인은 1,262만명으로 추정됨.

본 개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양승이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1호로 2023년 5월 26일 양송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로서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의2)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이후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